

기관 리포지터리 운영 가이드라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 “연구사업관리규정” 제25조에 의거, 디지스트에서 생산한 연구성과물 및 각종 성과물을 기관 리포지터리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수집·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 리포지터리”란 기관에서 생산한 연구성과물을 포함한 각종 성과물의 수집·관리·보존·공개를 위해 국제 표준에 맞는 고급 도구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디지스트의 기관 리포지터리는 이하 “DGIST Scholar”라 한다.
2. “연구성과관리시스템”이란 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자 및 연구성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디지스트의 연구성과관리시스템은 이하 “DRIMS”라 한다.
3. “오픈액세스(Open Access)”란 재정적·법률적·기술적 장벽을 없앤 학술정보 유통 모형으로, 전 세계 누구라도 온라인을 통해 학술정보에 무료로 접근해 이를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다운로드·복제·보급·인쇄·검색·링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데이터 추출과 색인, 마이닝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연구성과물의 생산자와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4. “셀프 아카이빙(Self-archiving)”이란 저자가 직접 자신의 심사(동료평가, peer review) 전후 논문의 디지털 파일을 오픈액세스 저장소에 기탁하여 온라인상에 무료로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그린 오픈액세스의 실행 방식이다.
5. “주관부서”란 DGIST Scholar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수집”이란 성과물 또는 그 메타데이터를 DGIST Scholar에 기탁·전송·반입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기탁”은 학술지 출판사의 셀프 아카이빙 정책에 따라 저자가 논문 원문을 DGIST Scholar에 보관하고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기탁자”란 디지스트 구성원으로서 출판사로부터 셀프 아카이빙 허락을 받은 학술지 논문의 저자이거나 저자로부터 기탁을 위임받은 자(주관부서 등)를 말한다.
9. “수집자료”란 DGIST Scholar에 수집된 모든 성과물을 말한다. 수집 방식에 따라 기탁자료, 반입자료, 전송자료를 포함한다.
10. “기탁자료”란 DGIST Scholar가 저자로부터 기탁받아 무료로 제공하는 그린 오픈액세스 학술지 원문(심사전 논문, 심사후 논문)을 말한다.
11. “전송자료”란 DRIMS로부터 전송받아 DGIST Scholar에 저장하는 연구성과물(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특허 등)을 말한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 기탁자료와 주관부서가 학술지 출판사 플랫폼에서 다운로드하거나 API 등의 기술적 조치를 통해서 수집한 골드 오픈액세스 학술지 원문이 포함된다.
12. “반입자료”란 디지스트의 석·박사 학위논문, 간행물 등으로 DGIST Scholar의 콘텐츠 제출 및 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직접 수집되는 자료를 말한다.
13. “메타데이터”란 데이터, 즉 수집자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기술하는 데이터 집합으로, 수집자료의 제목, 저자, 출처, 라이선스 등 수집자료의 색인·식별·검색·선택·보존·저작권관리 등을 위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시스템 운영 목적) DGIST Scholar의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성과물의 체계적인 수집·공개를 통해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제공해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2. 디지스트와 소속 연구자의 글로벌 인지도 향상 및 공동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기관의 연구 영향력 및 피인용 제고에 기여한다.
3. 세계적 오픈액세스 운동에 동참, 「유네스코 오픈 사이언스 권고」에 따라 사회와 연구비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대학의 과학기술 공동 활용 기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한다.

제4조(관리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은 디지스트 소속 연구자가 참여한 연구성과물 및 디지스트가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 있는 자료, 디지스트에서 발간하거나 디지스트와 관련이 있는 각종 간행물 및 콘텐츠에 적용한다.

② DGIST Scholar의 연구자 개인정보 관리대상자의 범위는 주관부서에 연구성과·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전임교원 및 정규직 연구원에 한한다. 단, 그 이외의 디지스트 구성원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 후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역할과 책임) DGIST Scholar를 운영하는 주관부서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DGIST Scholar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인력과 예산을 확보한다.
2. 기관 리포지터리 관련 기관 내외 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준수한다.
3. DGIST Scholar 운영을 「DGIST 경영계획」 및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 등 주관부서의 추진 목표에 연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4. 소속 연구자들의 셀프 아카이빙과 저작권 보호, 건전한 오픈액세스 출판을 장려한다.
5. 주관부서는 기탁자료의 형식과 포맷 검토에 대해서만 책임을 가진다.
6. DGIST Scholar를 활용한 연구성과물 서비스 및 기탁 절차, 검색, 컬렉션 구축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제공한다.
7. DGIST Scholar에 구축한 연구성과물 및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교내·외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제2장 수집 및 저작권

제6조(수집범위) ① DGIST Scholar에는 다음 유형의 자료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수집·공개할 수 있다.

1. 연구성과물: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단행본, 단행본의 장, 특허, 학위논문, 발표자료, 연구보고서 등
2. 각종 성과물: 강의/세미나 동영상, 뉴스, 이미지 및 동영상, 기관 내 발간물 등

② 학술지 논문 유형은 동료평가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심사전 논문(author's original)
2. 심사후 논문(accepted manuscript)
3. 출판버전 논문(version of record)

제7조(수집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정보는 DRIMS를 통해 DGIST Scholar에 전송된다.

1. 연구자 정보: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학술지 논문(journal article)
3. 학술대회 발표논문(conference paper)
4. 특허(patent)
5. 향후 시스템 간 연계 확대를 통해 전송하는 자료

- ② 제7조제1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유형의 자료는 주관부서가 DGIST Scholar의 콘텐츠 제출 및 관리 기능을 통해 반입한다.
- ③ 심사전/후 논문의 원문 파일은 학술지 논문의 저자 또는 저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DRIMS를 통해 제출하며 이 행위를 디지스트에 기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출된 학술지 논문의 원문 파일은 주관부서 검토 후 DGIST Scholar에 전송한다.
- ④ 출판버전 논문 원문 파일은 주관부서가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제8조(저자의 책임)**
- ① 수집자료의 유효성과 진본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 ② 저자는 수집자료에 대한 적절한 메타데이터를 기술하고, 연구비지원기관 정보를 명시한다.
 - ③ 저작권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 제9조(수집자료의 저작권 처리)**
- ① 주관부서는 수집자료가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공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 ② 저자는 제출한 자료의 복제와 전송을 위한 비배타적 라이선스(non-exclusive license)를 DGIST Scholar에 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저자가 저작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기관 리포지터리에서의 복제와 전송에 동의하는 절차이다. Creative Commons Licence 또는 공공누리를 통해 이용허락조건을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
 - ③ 저자는 학술지 논문을 기탁하기 전 출판사의 저자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확인한 후 적절한 학술지 논문 버전을 DRIMS에 제출한다. (SHERPA-RoMEO, KJCI 등 활용)
 - ④ 저자는 DGIST Scholar에 기탁하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을 보유할 것을 권장하며 공동저작권자가 있을 경우 기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저자가 기탁하고자 하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에게 기탁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⑥ 주관부서는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 및 자료에 부여된 이용허락조건을 재차 확인 후 오픈액세스가 허용되는 경우에만 학술지 논문 원문이 공개되도록 관리하고,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은 학술지 논문 원문은 메타데이터만 공개한다.

제3장 접근 및 이용

- 제10조(메타데이터의 접근 및 이용)**
- ① 수집자료의 메타데이터는 Dublin Core를 확장한 스키마에 따라 저장하며, 누구나 DGIST Scholar에 구축된 메타데이터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다.

② 메타데이터는 비영리적 목적의 활용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도 URI(handle) 및 메타 데이터 원문 링크 제공 조건 하에서 재이용할 수 있다.

③ 상업적 목적의 활용일 경우 공식적인 허가 없이는 메타데이터를 재이용할 수 없다.

④ DGIST Scholar의 연구성과 정보 연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내: 대표 홈페이지 및 각 학과·부서·연구실 소개 페이지 등 디지스트 관련 주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정보시스템
2. 교외: 공공데이터포털 등 국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플랫폼
3. 기타 관련 법령 또는 디지스트의 요청에 따라 연계가 필요한 경우

⑤ DGIST Scholar의 연구성과 정보를 학과, 부서, 연구실 등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연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DGIST Scholar Open API 활용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신청 목적 및 필요성, 제공 데이터 범위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제공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원문의 접근 및 이용) ① 누구나 DGIST Scholar에 수집 및 공개 처리된 논문 원문에 무료로 접근 가능하다.

② 원문은 제목, 저자 등 상세한 메타데이터와 메타데이터 페이지에 대한 링크 제공 및 내용 변경 금지의 조건 하에서 어떤 매체나 포맷으로도 복제, 전시, 공연 및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하며, 사전 허가나 비용 없이 연구, 교육 및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③ 원문은 Creative Commons Licence, 공공누리 또는 유사 오픈 라이선스를 통해 이용허락조건이 명시되었거나 저작권자의 공식적인 허가를 얻은 경우가 아니면 상업적으로 판매되어서는 안되며, 출판사 또는 연구비지원기관의 엠바고 기간 동안 비공개될 수 있다.

제4장 보존 및 철회

제12조(보존) ① 주관부서는 수집자료의 지속적인 가독성과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② 수집된 연구성과물은 영구히 보존되며, 기타 수집자료의 보존 기간에 대한 사항은 디지스트 “기록물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확인할 수 없는 파일 포맷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보존을 지원할 수 없다.

- ③ 필요할 경우 수집자료를 새로운 파일포맷으로 마이그레이션 한다. 모든 수집자료와 업그레이드된 포맷에 대한 원래의 비트스트림을 보존한다.
- ④ 최신 모범실무에 따라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며, DGIST Scholar의 서비스가 중단 될 경우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아카이브로 이관한다.
- ⑤ 모든 유형의 수집자료는 데이터의 품질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주관부서에 의해 입력·수정·보완·검증·승인·삭제·철회될 수 있다.
- ⑥ 기관 연구성과물의 확산을 위하여 퇴직자가 디지스트 재직 시 발표한 연구성과물은 기관 홍보 등을 위해 계속 보존,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비공개) ① 수집자료는 저자 또는 저작권자의 요청 및 주관부서의 판단에 의해 비공개될 수 있다.

② 수집자료 비공개는 다음의 경우 가능하다.

- 1. 학술지 출판, 지식재산권 취득 등의 사유로 학위논문의 공개를 유예할 경우
- 2.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3.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보호, 국가안전보장 등 법령에 의해 필요한 경우

③ 비공개된 자료는 DGIST Scholar에서 메타데이터가 검색되거나 공개되지 않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는 주관부서에서 공개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철회) ① 수집자료는 저자 또는 저작권자의 요청 및 주관부서의 판단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② 수집자료 철회는 다음의 경우 가능하다.

- 1. 저작권 위반 또는 표절에 대한 증거가 확인된 경우
- 2. 법적 요구사항 또는 위반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 3.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 4. 디지스트 “연구윤리요령”을 위배하거나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철회된 자료는 DGIST Scholar에서 삭제하지는 않지만 메타데이터가 검색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하며, 철회된 자료의 식별자 또는 URL은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제5장 통계정보

제15조(통계정보 자동수집) 이용자가 DGIST Scholar에 접근할 때 다음의 각 호의 정보

가 자동적으로 수집된다. 이는 이용자를 개인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며 기술적인 문제 해결, DGIST Scholar 사용성 개선 및 통계정보 기록의 목적으로 내부적으로 사용된다.

1. 인터넷 도메인과 IP 주소
2. 브라우저의 유형과 운영 시스템
3. 날짜와 시간
4. 방문 페이지

제6장 보칙

제16조(준용규정) ① 본 가이드라인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정부 부처의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특히 연구보고서, 연구노트, 기타 기관 간행물의 기탁 및 공개, 철회는 디지스트 “사무분장요령” 상 주관부서의 관리 지침, 가이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2023.06.09)

- ① (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 진행된 사항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및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기관 리포지터리(DGIST Scholar)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기관 리포지터리(DGIST Scholar) 데이터 활용을 위한 Open API 활용 신청서